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의명 :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4. 1. 31.(수) 15:00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 불참위원 : 없음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김홍일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두 분 중 두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김홍일 위원장
 - 지금부터 2024년도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홍일 위원장
 - 2024년도 제2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 의결사항

가.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2024-03-003)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가>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가. 2023년 재허가 대상인 한국방송공사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의 141개 방송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받은 53개 방송국에 대해 심사점수에 따라 [별지1]과 같이 5년,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재허가를 의결한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미만의 88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별지2]와 같이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다. 나. 2023년도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3]과 같은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한다. 다. 위 가.에 따른 조건부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 신청서 및 청문 시 제출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확실한 이행을 위해 [별지4]의 조건을 추가로 부과하되, 허가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가 소관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 일치를 요청하는 경우, 허가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입

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재허가 대상인 한국방송공사 등 34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주요 경과입니다. '23년 6월 30일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8월에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를 통해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11월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4년 1월 22일~23일에 8개사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4> 재허가 신청 방송국 현황입니다. 34개사 141개 방송국이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년도 재허가 심사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심사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시 최초로 담당과장을 제외하는 등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전원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보다 엄격하고 차별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재허가 대상 방송국이 2개 이상인 경우 재허가 신청서를 통합하고 매체 관련 사항만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재허가 심사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아 심사하는 종이 없는 심사를 최초로 도입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및 ESG 행정을 구현하였고, 이를 통해 심사 공간 활용, 심사위원 만족도 제고 등 업무 능률도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재허가 신청서 검증, 방송 관련 법령 및 (재)허가 조건 준수현황 확인 등을 위해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주요 문제점 등으로 지적된 사항은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6>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이재진 한양대 교수가 맡아주셨습니다. 심사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총 9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 재허가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심사평가 결과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 88개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 의견입니다. 총평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OTT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지상파방송이 콘텐츠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상파방송의 공적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재허가 등의 평가 정책은 지상파방송이 지역사회 활성화 및 신속한 재난보도 등을 위해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 심사의견입니다. 공통으로 방송의 공정성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편성과 운영규정, 취재보도 관련 윤리강령 강화 및 가이드라인 확립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MBC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 계획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으로, 이를 담보할 구체적인 방안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고, SBS 등 민영방송은 경영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독립적인 사외이사 복수 위촉, 자체 감사제도 실시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방송과 라디오는 방송법 및 심의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심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붙임> 심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 건의 사항으로는 허가유효기간, 사업계획서 구체화 필요성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9> 청문결과입니다. 청문은 65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28개사, 88개 방송국 중 청문을 통해 방송사업 운영 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MBC충북, 여수MBC, 제주MBC, 울산방송, 광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경인방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문주제자 의견입니다. 청문주제자는 조건부 재허가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재허가 심사에서 문제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재허가 조건 등에 세부적인 조건을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자별 주요 의견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0> 검토의견입니다. '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과 방송법령에 따른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 전파법령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그리고 시청자 의견청취 및 청문실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허가 여부,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허가 여부입니다. 재허가 기준은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 650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가 가능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650점 이상 평가받은 53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88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8개사 88개 방송국 중 방송사업 운영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문실시를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향후 방송사업자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하였고, 청문주제자 의견 및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재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가 취소됨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경인방송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를 하되, 향후 주주 간 계약서와 관련된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재허가 또는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이 취소 가능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유효기간 관련입니다. 허가유효기간 기준은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700점 이상 5년, 650점 이상 750점 미만 4년, 650점 미만 방송국은 3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심사 결과, 700점 이상을 받은 KBS 1UHD 방송국은 허가유효기간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받은 KBS 2DTV, SBS DTV 등 52개 방송국은 4년, 650점 미만을 받은 MBC충북 DTV 등 88개 방송국은 3년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재허가 대상 방송사가 소관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 일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허가유효기간 단축방안을 검토하고 허가유효기간 단축 관련 사항은 방송정책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관련입니다.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은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심사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미디어 환경, 방송사 경영상황, 정책 여건 및 시청자 의견 접수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등을 위해 유지 또는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조건 등은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법령·가이드라인에서 사업자에게 이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은 조건 부과에서 삭제하고 반복되고 유사한 조건 등은 하나로 통합하여 간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직전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에 따른 위반사항이나 정책목표 달성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 재허가에 비해 재허가 조건은 17개가 축소된 40개, 권고사항은 18개 축소된 14개입니다. 재허가조건 주요내용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 부분입니다. 지상파3사, 지역 MBC 및 지역민방 등에 대해 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MBC의 경우에는 '24년도 MBC DTV 등의 재허가 신청 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경영 투명성·자율성 제고 관련입니다. 방송 제작·편성이 아닌 경영에 관한 사항은 관성적 조건 부과를 지양하고, 기존 부과목적 달성 및 경영권 제한정도와 공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 자체 감사제도 실시 등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건은 지속적으로 부과하되, SBS의 경우 이행각서 준수 조건은 변경허가·변경승인 시 동일조건이 부과된 점과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허가 조건에서 삭제하고, 세전이익 15% 출연금 조건은 유지하되, 납부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부과목적이 달성된 광주방송의 프로그램 추가 투자 및 TBC의 방송운영 전문성 제고 사항은 조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콘텐츠 투자 유도 관련입니다. 지역방송 제작비 투자조건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정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KBS의 경우에는 '24년 KBS 1DTV 등의 재허가 신청 시, 실제 수신료 수입 등을 반영한 KBS 2DTV, 1·2UHD 콘텐츠 제작 시설투자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상파3사의 UHD는 재허가신청서의 UHD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집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제작 상생환경을 위해 비정규직 현황자료 제출, 외주제작 기준 준수 및 실적 등은 종전 등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하고, 시청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협찬상품 고지 조건을 유지하며,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시청자 보호방안은 권고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상파 UHD 구축을 위해 UHD 미구축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UHD 정책 준수 조건을 DTV에 부과하여 신규 허가 신청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라> 조건부 재허가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재허가 심사평가 결과, 청문주제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향후 방송사업 계획 등에 대한 이행 담보를 위해 조건(안)을 검토하였습니다. 650점 미만 TV·라디오 공통사항입니다. 방송평가 결과 및 방송평가 기준 등을 분석하여 개선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울산방송은 적자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혁신 방안 관련 사항을, (주)엠비씨충북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청문 당시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 이행을, (주)경인방송은 최대액출자자가 참여한 주주 간 계약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재허가를 취소하는 내용, DMB는 지상파DMB와 관련한 정부의 매체정책 준수사항을 조건부 재허가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 향후 정책추진 필요사항입니다. 향후 재허가 제도 개선을 위해 재허가 유효기간 확대, 심사방식 개선, 신청서 작성 기준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심의·의결이 되면 재허가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고, 재허가 심사결과와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하겠습니다. 또한 부과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사항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년 12월 말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상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였고, 당시 저희 위원회는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일부 방송사에 대하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미흡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 및 방송사의 향후 계획을 듣는 등 재허가 안전을 충분히 검토한 끝에 오늘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어려운 가운데 재허가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심사위원 분들과 안전 준비로 고생한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법 제17조에 의하면 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통위의 재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 심의·의결은 저희 방통위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방통위가 여러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그나마 위원회가 정상 개최되어 재허가 안전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모두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고, 재허가 신청서를 통합하여 최초로 종이 없는 심사를 도입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허가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실질심사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허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재허가 관련 법령과 기본계획, 그리고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청문실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안과 같이 전체 재허가 대상 중 심사평가 점수가 650점 이상을 받은 53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그 점수에 맞는 허가유효기간, 즉 700점 이상은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에 대해서는 4년을 부여하여 재허가를 의결하되, 매체 특성을 고려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고, 650점 미만으로 평가받는 88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하되, 개별적으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엄격하게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조건은 규제 완화 및 합리화 측면에서 삭제하거나 그 정도를 낮추어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이라는 방통위 소관 국정과제를 비교적 잘 이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여전히 필요하거나 강화되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를 유지하거나 상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부과 조건은 줄이되 필요한 조건은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등 그 균형을 잘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 경영 투명성 및 자율성 제고, 재무 건전성 제고 등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는 이를 유지하거나 강화하였고, 법령·가이드라인 등에서 이미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나 이행이 완료되어 시의성을 상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 부과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반복되고 유사한 조건 등은 하나로 통합하여 간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였고, 민영방송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또는 경영간섭에 해당되는 부분도 조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요 방송사를 보면 KBS의 경우 콘텐츠 투자와 관련하여 2024년도 KBS 1DTV 등의 재허가 신청 시 실제 수신료 수입 등을 반영한 KBS 2DTV, 1·2UHD 콘텐츠 제작 및 시설 투자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MBC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와 관련하여 2024년도 MBC DTV 등의 재허가 신청 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SBS의 경우 종전 이행각서 준수 조건은 변경허가, 변경승인 시 동일 조건이 부과되고 있는 점과 그동안의 이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불합리한 규제 또는 경영 간섭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재허가 조건에서 삭제하는 대신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기존 조건과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독립 사외이사 위촉, 자체 감사제도 등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번 재허가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심사평가 점수가 650점 미만인 방송국수가 88개나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고, 이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허가 평가의 40%를 차지하는 방송평가 점수 결과가 TV에 비해 라디오가 저조한 것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지역MBC, 지역민방, 특히 라디오방송을 실시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법이 부여한 공적책무·공공성·공정성 구현이라는 법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65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 중 영업손실 증가, 콘텐츠 투자 미흡, 경영진 문제에 있어서 방송사업 운영 능력 등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주재자 의견, 시청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 방송사업 계획 등에 대한 이행 담보를 위해 별도의 조건을 추가로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해당 방송사가 방송법이 부여한 공적책임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 사업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해당 방송사업자는 당해 심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서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사의견서에 따르면 UHD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상파 UHD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의 UHD 방송망 구축, 콘텐츠 투자 등의 노력이 매우 미흡한 현실입니다. 지상파 UHD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던 시점과 비교하여 현재 방송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UHD 프로그램 편성 비율, 방송망 구축 등 UHD 주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들께서 건의하신 재허가 평가방법 개선, 허가유효기간 재검토 등에 대하여는 사무처에서 면밀히 살펴서 향후 재허가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사위원분들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이번 재허가 심사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12월 31일 34개사 141개 지상파방송국의 재허가 조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재허가 심의·의결을 연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간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송사별 미흡사항,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건의안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습니다. 재허가 점수가 650점 미만인 사업자 중 청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8개사에 대해서는 이틀에 걸쳐 청문도 실시 하였습니다.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향후 방송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하였고, 고민 끝에 '조건부 재허가'가 바람직하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 및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문을 실시한 8개사를 포함한 650점 미만 방송국 모두 '조건부 재허가'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허가 조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미디어 환경과 방송사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법령 등에 준수 의무가 규정된 조건은 삭제하고, 반복되고 유사한 조건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명확성과 간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콘텐츠 투자 계획의 제출,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시청자 보호 방안 마련과 방송제작 상생환경 조성 관련 조건 등은 계속 유지하고, 방송 제작·편성이 아닌 경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 부과목적 달성하였는지 여부, 경영권 제한 정도와 공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완화하거나 조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방송전문경영인 제도는

유지하고, 독립 사외이사를 위촉하며 자체 감사제도 실시 등의 조건은 계속 부과되, SBS의 이행각서 준수 조건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시 동일조건이 부과되었던 점과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 재허가 조건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은 지상파방송사가 추구해야 할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인 만큼, 기존 권고사항으로 부과되었던 취재보도 윤리위반 방지 관련한 사항을 조건으로 상향해서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허가 의미 및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는 '재허가'를 단순히 정부로부터 허가권을 받는 행위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적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무 이행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지난 12월 취임사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책임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및 심사평가 체계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무처에서는 관련법령과 절차 등에 따라 재허가 후속 절차 등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등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4-03-004)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나>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해선 편성평가정책과장직무대리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방송평가 감점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송법」 제18조제1항 제재조치인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에 대해 감점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3년 11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그리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보고를 마쳤습니다. 12월에는 부패영향평가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방송법」 제18조제1항 제재조치인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적용대상은 방송평가 대상 전체 사업자입니다.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 시 15점을 감점하는 내용입니다. 적용시점은 ’25년에 평가하는

'24년도 방송 실적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행정예고(안)에 대한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입니다. 제출의견입니다.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에 대한 감점 신설은 과도한 중복규제이며, 현재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침익적 성격의 규정은 규정 개정 이전의 사유에 대해 소급적용해서는 안 되며, 규칙 개정 이후에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 한정하여 감점하도록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신설되는 감점은 「방송법」 제18조제1항 제재조치에 대한 감점으로 방송평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과징금 등은 감점을 하고, 업무 정지 등에 대한 감점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고 감점 수준이 과징금 처분의 감점수준이므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방송평가규칙'과 '방송평가세부기준'은 방송평가 감점 적용을 위반사유 발생일이 아닌 제재조치 결과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관된 방송평가 기준 적용이 필요하여 불수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4년 2월 「방송평가에 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관보에 게재 후 시행합니다. 다만, 동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5년에 실시하는 '24년도 방송실적분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이번 규칙 개정안은 현재 방송평가 감점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송법」 제18조제1항의 제재조치인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에 대해서도 감점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은 「방송법」 제18조제1항 제재조치인 업무 정지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감점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거쳤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방송사에서 과도한 중복규제이며, 개정 이전의 사유에 대해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도 감점을 하고 있고 감점수준이 과징금 처분수준 15점이므로 과도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방송평가규칙과 방송평가세부기준은 방송평가 감점 적용을 위반사유 발생일이 아닌 제재조치 결과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관된 방송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방송법상 책무를 잘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정지나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 등의 제재조치는 사업자에게 중한 위법사항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평가규칙 개정은 중한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을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개정사항을 사업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김홍일 위원장
-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37분 폐회 】